
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

[시행 2017.9.22.] [대통령령 제28328호, 2017.9.19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나,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이사회 의 승인 및 보통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되, 이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14715호, 2017. 3. 21. 공포, 9. 22. 시행)됨에 따라, 부동산 매매가격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도록 하고,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(인)

2017년 9월 19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

◎ 대통령령 제28328호
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 단서 중 "법 제30조제1호"를 "법 제30조제1항제1호"로 한다.

1.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 의 승인 및 「상법」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

제3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.

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현물출자"는 "부동산 매매거래"로, "현물출자자"는 "거래당사자"로 본다.

제40조제1항제13호 중 "법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"를 "법 제30조제2항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